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변경 내용 소개

Introduction about Modification of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System



김승일

I. 개요

우리 교통 분야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된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이 대표적인데, 물류, 자동차 부문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지만 매년 약 500억원 이라는 대규모의 정부출연금에 편성되어 교통공학 분야의 발전과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중이다.

그동안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소관분야에 해당하는 ICT 및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어 편성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국토해양부에서도 적극 유치, 편성하게 됨으로써 교통분야에서도 많은 연구 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많이 참여중에 있으며, 이전 '건교평 R&D'라는 약칭으로 전혀 생소하지 않은 분위기라 판단된다.

단,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 씬씀이에 대한 제약과 관리가 철저함은 피할 수 없었기에 연

구자는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의 '효율'과 '부정 집행'의 우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수고를 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비 관리규정 익히라, 연구하라 연구진들의 노고가 컸으며, 바쁜 와중에 연구비 관리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리라 생각된다.

이에 연구비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연구진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올해 5월 정부가 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대통령령)" 중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차적인 관리기준은 앞서 소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대

통령령”이며, 개별 부처는 그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하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851호 '12.7 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경된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올해 7월 개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시한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이 8월 개정 공표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올해 변경된 공동관리규정과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I.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을 총괄편성 및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관련 18개 부처·청과 협력하여 연구자가 보다 편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통관리기준인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변경된 주요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국과위의 연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부처별로 세부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소수의 연구비 부정을 막고자 생기는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세부기준들 중에 통제가 필요한 사항들은 공동 관리규정으로 신설하고,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복잡한 부처별 세부기준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다.

현행 연구활동비 중 국내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식대, 회의비 등을 분리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신설하였습니다. ① 현재와 같이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목의 간소화 (4개→2개 비목)	제12조
------------------------	------

【개정 전】

4개 비목, 7개 세목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②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③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④ 간접비	간접비

【개정 후】

2개 비목, 8개 세목	
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②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연구과제추진비 신설	제12조, 제19조, 별표2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을 면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별표2의 2의 연구과제추진비의 부당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고, 증명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연구비 세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변경	별표2
------------------------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을 개선하였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② 계속과제의 직접비를 다음연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③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

- ④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이상 늘리려는 경우
-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세 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	실지금액 계상	급여총액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총당금/본인·기관부담금 포함)계상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 인정범위 확대	기간 명시 없음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인정
연구장비·재료비	장비구입 시점 변경	과제 종료 1개월 이전구입 완료	과제 종료 2개월 이전 구입 완료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여비계상 기준의 구체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 실비 계상	①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르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계상 불가 ②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신설	.	시험·분석·검사,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신설

전문기관 승인사항 명확화	제12조의2
연구비 부당집행 사용기준 구체화	제19조 8항, 별표2의 2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 부당집행의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과제수 제한(3책5공) 제외과제 확대 및 참여율 제한 완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과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로 인해 연구비 규모가 작은 과제와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등에 우수연구자가 참여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별 시작·종료 시점이 상이함에 따른 실시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율 관리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연구비 규모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3책 5공 제외과제를 확대하였으며, 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연구비 참여율 제한을 완화하였다.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며,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최대 3개 이내

3책5공 제외과제 확대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 일정 금액 이하(국과위 고시)인 과제 →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에게만 적용 ■ 소액(국과위 고시)과제	제32조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과제를 말하며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탁과제는 과제수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제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과제란 연구비 규모가 작은 단독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하나인 경우를 의미한다. (세부과제나 협동과제 없이 단일한 과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시하였다. (국과위 홈페이지 및 R&D 도우미센터에 게재)

연구과제 참여율 제한 기준완화 출연(연), 특정(연) 등의 참여율을 130%까지 계상하도록 확대	별표2
---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출연(연) 등의 연구자 참여율을 최대 130%까지 계상(정부수탁 사업 및 기본사업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연구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기준 인건비의 100%까지만 지급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소속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은 해당기관의 기준 인건비 총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준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계획·사용금액·사용 후 집행내역 등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율을 130%까지 이미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수당 계상을 목적으로 한 참여율 계상은 할 수 없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정보의 정보관리 시스템 등록 의무화	제25조
--------------------------------------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과제별 참여율 등을 전문기관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학생인건비 풀링제)

대학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의 부정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학생인건비 풀링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범부처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의 개선을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의 정산을 면제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제도명칭 변경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확대	제12조의3 제1항
-------------------------------	---------------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대학·특정연구기관만 가능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출연(연)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잔액 정산 및 반납 면제	제12조의3제3항, 제19조제4항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잔액의 정산 및 반납을 면제하여 과제공백기 등에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인건비 외의 직접비에서 연구과제비가 남은 경우 학생인건비로 전용하여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강화	제12조의3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선정신청이 가능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 점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 2회 내에서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잔액 정산 및 반납 면제 등의 혜택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부여하였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은 3년이나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일정금액 이상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이 많은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경우 등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지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침을 통해 확인)

(적용시기) 동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4. 간접비 기준 정비

간접비 계상기준을 매년 고시하여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현 사용용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간접비 산출·계상 및 집행의 세부기준 마련 시 합리적 근거로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간접비 산출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간접비를 해마다 산출함에 따른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간접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변경 별표2

현행 “지원인력 인건비”와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를 “지원인력인건비”로 통합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 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기관의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며, 소속 연구자·지원인력 등에 대해 반드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연구 간접비 총액의 5% 범위에서 설립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적용시기) 다음 간접비 산정 및 고시는 2013년에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신청 기관에 한하여 2012년도 간접비율을 추가로 산출한다.

5. 기초연구에 대한 특례 마련

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 응용, 개발, 상용화 등 상이한 연구특성의 과제를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독창성과 도전성이 중요한 기초연구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보고서 등의 행정부담 완화, 성실실패 도입 등 기초연구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승인 없이 협약기간 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정하는 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출문서의 종류, 보고서 작성사항,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정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수행 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었다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개발과제 신청·선정시 감점 부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6.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별로 제재 기준이 상이하여 공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참여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환수 사유별 한도액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연구과제비 환수사유별 환수한도액에 대한 기준 마련 별표5

환수 사유	환수 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실제 사유별 구분이 어려웠던 횡령·편취·유용·전용 등으로 구성된 현행 연구비 용도의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을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참여제한기준〉

개정 전	개정 후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한 경우 : 3~5년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2~3년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용도의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30%초과 : 5년 이내 용도의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30% : 4년 이내 용도의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3년 이내
동시에 수행중인 타 과제에서 연구비 용도의 사용 등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협약해약 가능	제11조

동시에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한 과제에서 연구비 용도의 사용 등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과제의 협약도 해약될 수 있다.

7. 기술료 기준 범부처 표준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규정에는 기술료 징수근거와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용도만 규정하고 기술료 징수방법, 금액 기준 등은 부처별로 정하고 있어 관리기준 상이로 연구현장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이를 실시하려는 기관간의 계약조건을 규제하여 시장가치에 따른 연구성과 확산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계약자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납부기술료의 비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부처 공통으로 표준화하였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명문화	제22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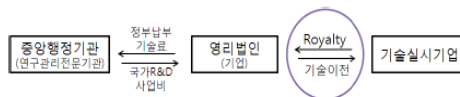
아래 2가지 경우에 있어서 로열티(Royalty) 개념의 기술료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금액 등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과 기술실시기업 간 기술료 징수



▶2) 영리법인의 제3자 실시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 기여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근거 마련	제23조제8항
---------------------------------------	---------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이전 한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활용하여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Ⅳ.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1. 추진배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5.14)내용을 반영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의 연구활성화 기반 마련, 기술료 징수기준 마련,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비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공동규정과 연동)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기준 정비하였다. (안 제30조·제31조·제32조 및 별표 2)

모든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중전에는 대학만 가능)하였고, 연구개발비 비목 단순화(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 → 직접비·간접비)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 변경, 직접비 이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감액,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가, 학생 인건비 증액(통합관리기관에 한함)

출연연, 특정연 연구자들의 참여율을 확대하였다. (제31조 관련 별표2)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참여율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여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추진하였다.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은 연구결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체 실시 시 기술료 징수기준*과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44조)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 30%, 대기업 : 40%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참여제한 기준 정비 및 사업비 환수기준 마련(안 제51조 및 별표 4)하였는데,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연구개발비 환수기준을 마련하였다.

- * 20%이하 : 3년 이내, 20%~30%이하 : 4년 이내, 30%초과 : 5년 이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안 제57조)하였는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는 연구개발과제 건수*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과제는 제외하였다.

- * 연구과제 최대 5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는 3개 과제)

기초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특례(안 제58조 신설)를 신설하였는데, 기초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실패과제(60점 미만)로 결정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대내·외 환경변화 상황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정규직원 → 직원) 완화(안 제14조제2항), 연구기관 직원들의 근로여건(계약직 연구원 증가)을 반영하여 능력 있는 신진연구자 및 계약직 연구자의 국토해양R&D에 참여토록 유도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47조 내지 안 제47조의10)하였는데 기존의 '국토해양부소관 R&D사업 보안관리지침'(국토부 훈령)을 폐지하고 운영규정에 신설하였다.

V. 종합 및 결론

상기의 국가공동규정과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의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완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연구자의 자율성과 연구자체로의 역량을 쏟도록 하는 제도적 배려가 가장 큰 방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기술실시계약 등 기술의 소유권 및 실용화 관련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용화를 장려하도록 조치한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교통부문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고 본다. 제도적 규제나 행정의 어려움으로 참여를 망설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보다 더 연구자 중심으로 환경을 조성하게끔 변모하고 있

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으며, 그간 개발에만 치중했던 연구에서 현장 실용화를 위한 연구로 변모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교통관련 학계, 산업계는 변화하는 미래 기술트렌드를 대응하여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을 개척함에 있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으면 한다. 또한 개선된 자율성에 부응하는 연구의 질적 향상이 수반되어야 우리 교통기술의 지속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88호, 2012.5.14).
-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2. 7. 18 훈령 제851호).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 (2012. 8. 23).